

**공 고**

**기안용지**

분류기호 문서번호	1970. 4. 9	(전화번호)	권결규정 국장	조 권결사항
처리기한		기안자	결재자	
시행일자		공업차장 박형은	산업국장 <del>김영</del>	
보존년한	1970. 4. 9	기안일자	결재일자	
		70. 4. 3	8. 9	
보조기관	공업차장	<p>확법 인무 4월 9일 본</p>		<p>주심 부 제 사 호</p>
협조	시민회관	<p>법고제 77 호</p>		
경수참	유신조	각안차	<p>통 검 열 발 1970. 4. 9 서울특별시 공무원</p>	<p>정 서 과 대 장 장 리</p>
제	목	수출품 생산 지정업체 대체 지정 및 상호 변경		
제 1 안	내부결재			
	1. 관하 수출품 생산 지정업체 중			
	가. 한양 섬유 공업사 2 대동가미 연기반정			
	나. 있었기 (성북산업 1320-229 참2) 이를 대체 지정하			
	나. 황하물산 수식회사의 상호 변경은			
	나. 증수기업 수출품 생산 지정업체 지정 및 기타은관			

제 11조: 3항 및 4항 규정의 의거 식근하리함이다.

공공내역

가. 대체 지정

변경 전

변경 후

기업체명	대문자	소재지	기업체명	대문자	소재지
한양실업유망회사	이석희	성북구 마포동 122-3	화 등	김유중	과 등

나. ~~변경~~

변경 전

변경 후

기업체명	대문자	소재지	기업체명	대문자	소재지
철리물산 주식회사	대문자 황승민	영등포구 신길동 107	진양실업유망회사	화 등	과 등

공

제 2안 (공공내역)

서울특별시 공 2재 호

수출품 생산 지정업체 대체 지정 및 상호 변경 공고  
 관하 수출품 생산 지정업체의 대문자 명의 변경이 있었기  
 이를 대체 지정함과 동시에 상호 변경 업체를 다음과 같이  
 공 2재 호이다

1970. 4.

서울특별시

1. 대문자 변경

2. 상호 변경

내용은 1안 ~~공공내역~~ 재시행

2-2